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사업예산제도의 도입배경

Ⅰ 질 의 Ⅰ

-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Ⅰ 회 신 Ⅰ

- 1980년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소위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를 경험함에 따라 이의 타개책으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재정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게 됨.
-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성과지향형, 정책중심형 정부 구현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친 예산개혁을 통해 종전의 투입(input)중심의 정부 예산 운용에서 벗어나 산출(output)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함

-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 재정운용의 틀을 혁신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및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방식 등을 도입함
- 아울러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계,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등을 위해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됨.

2. 사업예산제도의 장점

■ 질 의 ■

- 사업예산제도 도입 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 회 신 ■

- 예산의 기본구조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순으로 새롭게 체계화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어느 조직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됨
- 즉 예산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짐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게 됨.

3. 사업수행 중 조직이 바뀔 경우

■ 질 의 ■

- 사업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조직’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 신 ■

- 조직변경의 경우 이체의 방법을 통해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평가 분야는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4. 예산편성 및 배정의 범위

■ 질 의 ■

- 예산편성/예산배정의 단위

■ 회 신 ■

- 예산편성의 경우 ①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 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 등 자료를 포함하여 요구하여야 함. ②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할 경우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성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되, 통계목-산출근거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게 됨.
- 예산배정의 경우 ①사업부서에서는 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이 기재된 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며 ②예산부서에서는 조직-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만 확정하고 통계목은 내부적으로 관리함.

II.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 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 질 의 ■

- 자체심사를 위하여 접수한 아래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 질의 1
 - 사 업 명 :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
 - 사 업 비 : 29.2억원(국, 시비 50%)
 - 소 유 자 : (주)XX 회사
 - 사업내용 : 그 동안 임대해서 사용했던 폐기물비위생 매립장을 원상복귀하여 원래 소유자에서 제공함에 있어, 매립장에 대한 정비공사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짐

□ 질의 2

- 사업명 : 초등학교내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운영
- 사업비 : 총사업비12.5억원(2.5억원 x 5개소)
- 사업내용 : 교육청으로 부터 관내 초등학교 5개소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학교의 유희교실 리모델링수리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회신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며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Ⅲ. 지방채

1.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여부

■ 질 의 ■

-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IV. 예산의 편성

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국비의 예산편성

■ 질 의 ■

-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국비를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방법은

■ 회 신 ■

-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국비에 관하여는 간주처리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조치 및 세계잉여금으로 처리 후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2.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성립전 예산집행 여부

■ 질 의 ■

- 국고보조확정내시에 의거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경우 이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고 있으므로
- 동 국고 보조사업이 이와 같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음

3. 연도폐쇄된 이후에 수납되는 융자금이자 등의 처리방법

Ⅰ 질 의 Ⅰ

- 융자금에 대한 월부금 및 이자가 연도 폐쇄된 이후 수납될 경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2)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난년도수입(229-01)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Ⅰ

- 융자금 이자와 연체금이 당해연도 수납분으로 익년도 2월 말일까지(출납폐쇄기한)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산과목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과목이 될 것이나
-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수납할 수 없게 되므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수납되어야 할 것임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과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Ⅰ 질 의 Ⅰ

- 전년도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중 정액분이 지급 누락되었을 때 다음연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시기는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로 정하고 있어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TV, 신문 등에 의한 광고료 집행범위

■ 질 의 ■

-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에 “시정주요시책 특집광고료” 예산을 편성하여 자치단체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자료를 작성 일간신문사에 제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자치단체장)과 “을”(신문사)이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료로 집행(해당신문사 송금)한 사항이 보도관련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지
- 만약 보도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상 “일반운영비” 비목은 TV · 신문 ·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용도 등에 지출되는 경비로써 상기 설정내용 이외에 보도관련 사례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것임
- 아울러 “공고료 및 광고료”는 공고 또는 광고형태의 게재에 따른 반대급부적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단순히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기관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에 대하여는 공고료 또는 광고료를 지출할 수 없음

3. 직장 동호인회 국내여비 지급가능 여부

■ 질 의 ■

- 직장동호인에서 공무와 무관하게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

■ 회 신 ■

-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직장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여비는 공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내여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4. 6급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

■ 질 의 ■

- 6급 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은

■ 회 신 ■

-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6급의 경우라도 그 직책이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5. 조례·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가능여부

■ 질 의 ■

- 조례 규칙에 의한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직책급업무추진비지급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예를 들어, 시, 도의 임시조직인 ○○○기획단의 단장 또는 과장 등의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음

6.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 가능여부

■ 질 의 ■

- ○○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50%미만 출연가능규정)에 저촉되는지

Ⅰ 회 신 Ⅰ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제한 규정 관련
 - 동법에서는 법령규정에 의한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자란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지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원을 부담하고 부담한 재원의 잔존가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내용에 따라 배당받고 해산시에도 책임을 지는 등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이며,
 - 출연이란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을 여건상 직접수행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행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제한에 관한 규정은 출자와 성격이 다른 출연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출연의 경우 지방재정법 17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바, 자치단체가 출연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상의 출연금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경비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 관련
 - 동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의 출자 또는 출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성격상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법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7. 실시설계비로 심사수당 지급가능 여부

Ⅰ 질 의 Ⅰ

- 테마파크건립사업 건축설계,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평가 위원들의 심사수당 지급에 대하여
 - 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을 시설비의 공모설계비는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 지

- 시설비에 따른 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 금액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내부 방침을 정함)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중 행정안전부 훈령 제159호 실시설계비는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위원 수당지급이 가능하며, 수당 금액은 귀 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당관련 조례에 의거 지급함이 타당함

8.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편성 가능 여부

■ 질 의 ■

- ○○시에서는 ○○음악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학교와 ○○ 음악밸리 부지내 음악관련 대학원을 중심으로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하고 지난 2006년 7월 기본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협약 체결내용중 “양 당사자는 실행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음악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조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학교 측에서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음악밸리 마스터플랜을 연구(용역)하는 제안이 있었는 바, ○○시에서 ‘민간대행사업비’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교 측에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방법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로 민간대행사업비의 예산편성은 타당하지 않음

VI. 예산의 변경 관리

1. 이월예산의 운영방법

■ 질 의 ■

- 이월예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 회 신 ■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예산 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이월하는 연도의 세부사업과 함께 관리
 - － 다만, 이월결정시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이월예산 확정시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회계이월 사용 가능여부

■ 질 의 ■

-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회계이월 관련 △△년 12월 말에 송금된 사업비를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 사용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조치 및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연도 1회추경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국비에 관하여는 간주 처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 기준(2005. 4. 21. 재정정책팀 - 454)
 - 최종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처리하고 간주처리 후는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을 보고
 -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

3. 예산의 이용 개념

■ 질 의 ■

- 예산의 이용이란 무엇인가

■ 회 신 ■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함

4. 예산의 변경사용 절차와 제한사항

■ 질 의 ■

□ 예산의 변경사용 절차와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 회 신 ■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 변경사용결정 : 사업담당자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
 - － 변경사용제출 : 사업부서가 변경사용을 처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산·자금·회계부서에 그 결과를 세출예산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며, 예산부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하고,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 ※ 변경사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세부사업 신설가능

5. 이월사업의 변경사용 여부

■ 질 의 ■

□ 명시 또는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 동일한 목그룹내 편성목 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됨
- 그러나, 이월예산은 세부사업단위로 결정·관리되므로 세부사업의 신설은 이월 목적 외 사용으로 사료되어 불가능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의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의 변경만 허용됨

6. 예산의 이체방법과 관리

Ⅰ 질 의 Ⅰ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방법과 관리방법은

Ⅰ 회 신 Ⅰ

- 조직의 변경 형태에 따라 예산의 이체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1)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
 - 또한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도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2)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 사업을 사용(내용의 변경 가능)
 -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사례1〉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
 - 〈사례2〉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
 - 3)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된 예산의 관리 방법은
- 1) A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B부서로 이체되는 경우,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
 - ※ 이체 받은 부서에서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가능
 - 2)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 A부서가 2개 이상의 A,B부서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

다만,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7. 이월사업에 대한 이체 가능여부

■ 질 의 ■

- 이월예산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이체는 직무 권한의 변동에 의해 사업(최소한 세부사업)에 관한 관리 권한이 이동하는 것으로
- 이체 결정시 해당 세부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즉, 당해예산액, 이월 및 이·전용·변경사용된 예산현액 뿐만아니라 자금·지출(계약 포함)도 함께 이체됨

VII. 기타 지방재정제도

1. 개별기금의 일반회계 용자 가능여부

■ 질 의 ■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용자 등에 활용하고자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만약 급하게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여 용자를 하고자 한다면 개별기금 조례에 일반회계에 용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각 기금별로 일반회계에의 용자가 가능한지

■ 회 신 ■

-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하여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용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용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용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용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기금운용 변경시 지방의회 승인여부

Ⅰ 질 의 Ⅰ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 기 편성된 기금운용 계획중 주요항목이 신설될 경우(해당 기금총액의 10분의 5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 2) 시교부금 교부 등으로 수입계획에 장, 관, 항 등이 신설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의회에 안건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의회에서의 반송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1)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는 주요 항목간의 조정으로 ‘±0’이 되는 경우는 물론 새로운 수입으로 인한 주요항목 규모의 증가 그리고 주요항목의 신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중에서 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출예산 변경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세입예산 변경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수입계획의 변경은 물론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상기 1)과 마찬가지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 3) 반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방의회에서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송할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첨부

VIII. 지방예산 용어 해설



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서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임



공공사업조기발주배정(公共事業 早期發注配定)

공공사업조기발주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비를 회계연도 개시 직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가 주요대상이 됨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표준수준의 일반적인 수입액을 의미하며 지방세, 경상세외수입등이 포함



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임



재정의 부당한 영향금지(財政의 不當한 影響 禁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그 지위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으나, 운용면에 있어서는 부단히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독립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균형과 조화가 상실되게 될 수 있음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호 보장하면서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전체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단체상호간의 균형과 조화의 유지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책임준비금 부족분(責任準備金 不足分)

국민연금 등 연금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미리 쌓아놓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함. 현재 국민연금 등은 거둬들인 보험료가 책임준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나랏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줘야 함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특정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입을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사용종료 후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수입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을 말함